

『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세진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2조).
- 공개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.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, 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 및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안의 목적(안 제1조), 공개대상(안 제2조), 공개방법(안 제3조), 예산낭비 등 심사(안 제4조), 성과금 지급(안 제5조)등 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,

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 및 제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 부합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